



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훈련용품 구매

과업지시서

2022. 07.



경기도체육회

GYEONGGI-DO SPORTS COUNCIL

목 차

I . 사업개요	1
II . 과업지시서	1
1. 과업개요	1
2. 과업 지시내용	2
3. 특기사항	3
4. 유의사항	3
5. 과업의 범위 및 내용	3

I**사업개요**

1. 사업명 :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

2. 사업개요

가. 기간 : 2022. 3. ~ 12.(연중)

나. 대상 : 경기도지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학교운동부

다. 장소 : 경기도지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

라. 규모 : 25개교(초 : 6개교 / 중 : 10개교 / 고 : 9개교)

마. 주요내용

- 학교운동부에 대한 훈련용 장비 및 용품지원
- 지원내용 : 고가의 장비(과학적 훈련기기) 및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공동 훈련기구 및 용품 우선 편성

II**과업지시서**

1. 과업개요

가. 과업명 : 『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』 훈련용품 구매

나. 과업내용 :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훈련용 장비 및 용품 구매

사업명	세목	품목	수량	비고
합 계			2,046개	
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	일반수용비	육상 타이즈 등 45품목	1,585개	
	자산취득비	탁구대 등 131품목	461개	

다. 용도 : 『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』 선정 학교 훈련용 장비 및 용품 지원
 라. 납품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(수입물품과 같이 통관 절차 소요 등의 사유로 납품 기한이 늦어질 경우 별도 협의 가능)

마. 기초금액 : 금408,691,000원(금사억팔백육십구만일천원)(VAT포함)

2. 과업 지시내용

가. 일반사항

- 1) 본 사항은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용품 구입 입찰(계약)에 적용한다.
- 2) 본 견적(입찰)에 참여하기 전에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용품 및 장비 구입 목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담당자(031-250-0492)와 협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기자재 및 그 일부를 제작자의 국가, 대한민국 또는 기타 국가 내에서 보호되는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제3자로부터 어떠한 정당한 청구도 받음이 없이 발주자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, 만약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본회에서는 계약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- 4) 모든 제품은 정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인증서(보증서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수입 제품일 경우 수입인증서 등 수입사에서 발생하는 공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모든 내용물을 원상태로 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반 중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(파손)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.
- 6) 포장된 제품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명 및 규격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, 지워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.
- 7) 납품품목 및 수량은 사양서의 품명 및 수량과 동일하여야 하며, 최근 1년 이내 생산 제품으로 납품,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- 8) 모든 물품은 학교별 지정 장소로 납품하며, 학교에서 포장 해체하여 실질검수를 실시하도록 한다.(포장에 사용된 재료는 전부 수거해 간다.)
- 9) 장비의 설치 과정에서 물품의 훼손, 파손, 고장 등의 발생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변상한다.
- 10)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유지 및 작동에 필요한 교육을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11) 납품 품목은 출고한 원형(각종 내용물, 설명자료 등)대로 납품하여야 한다.
- 12)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따른다.
- 13)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보증기간에 이상이 발생 시 무상 A/S를 실시하여야 하며, 수리 요구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- 14)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, 납품 장소는 학교별 지정장소로 한다.
(수입물품 - 사업부서 별도 협의 가능)

3. 특기사항

가. 검사

- 1)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모든 물품을 학교별 지정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, 담당자의 입회하에 물품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직접 받아야 한다.
- 2) 검사 결과 필요시 각부의 기능을 조정하여 최적의 운용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나. 기타사항

- 1)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납품 완료시점으로 본다.
- 2) 물품 납품 시 유지에 필요한 기본 부품등을 포함하여 납품한다.
- 3) 기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상 관례에 준한다.
- 4) 수입품목에 대한 납품완료 시기(수입에 따른 납품지연 시)는 별도로 정하며, 사전검수는 납품확약서로 대신하며, 납품완료 시 해당서류(세관통과서 등)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4. 유의사항

- 가. 본 과업지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업 지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자의 의견제시와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다. 상표권 침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.

5. 과업의 범위 및 내용

가. 과업수행의 원칙

- 1)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 하며, 과업지시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.
- 2)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- 3) 과업지시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지원과 자료를 제공한다.
- 4)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, 규정, 지침 등에 의거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